

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6년 11월 10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6년 11월 13일

라. 상정일자

- 2006년 11월 17일 제12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
- 2006년 12월 21일 제12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재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최 경 환

나. 제안이유

- 맑은 물 공급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전환되고 환경변화에 따른 민원 사항의 개선,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
- 요금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며, 그동안 수도급수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- 2005.01.01 수자원공사 정수, 침전수, 댐용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재원 확보
- 규제개혁 추진지침에 의한 자의성이 개제될 여지가 많은 조항 보완

다. 주요내용

- 급수구역중 관할지역 이외의 지역의 명문화 (안 제3조)
- 상수도요금을 업종별 평균 9.91 % 인상 (안 별표2)
- 과태료 부과에 따른 행정절차 규정의 신설 (안 제48조)
- 이의 신청기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조정 (안 제51조)
- 규제개혁 과제에 의한 재량행위에 대한 규정을 개선, 보완, 삭제 (안 제3조, 제7조, 제9조, 제21조, 제25조, 제30조, 제41조, 제48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, 제131조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신청), 제137조(지방공기업의 설치·운영)
- 「수도법」 제23조(공급규정), 제25조(관할구역외의 급수) 제51조(요금 등의 강제징수)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2조(요금)
-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 제2조의2(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) 제18조(요금의 산정방식)
- 지방상수도 요금산정요령(행정자치부 예규 제180호. 2005. 12. 27개정)
 - 근거 : 지방공기업법 제22조, 같은법시행령 제18조
- 「지방세법」 제27조(가산금 및 독촉), 제73조(이의신청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황 창 수

- 본 개정 조례안은 제120회 임시회시 과도한 인상율로 인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요율 조정 등 신중한 판단을 위해 심사 보류된 건으로서
- 환경변화, 공기업 경영의 합리화 도모, 요금 기준의 합리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고, 기채상환 자금 확보, 시설확충과, 수질 개선 등을 위하여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, 과도한 인상은 지양하되, 적정한 부분의 요금 인상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부칙②의 적용례는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에 따른 최소한의 홍보 기간이 필요하므로 200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